

2027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2027년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채용 직종	고용 형태	채용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직무기술서[붙임 1] 참조)
기상상담 (전문상담)	기상상담원	기간제 근로자	3명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과천청사)	• 기상문의 전문상담, 자료 수집 및 기상상담원 예보 교육 등

※ 근무지 주소: 정부과천청사(경기도 과천시 소재)

※ 채용 분야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	근무유형 및 근무시간
기상상담 (전문상담)	'27.1.1. ~ '27.12.31. (12개월)	월 280만원 내외 (식비 포함, 세전)	• 주간 교대근무 - 주간1: 07~16시(휴게 1시간) - 주간2: 13~22시(휴게 1시간) ※ 근무예시: 주간1 → 주간2 → 비번 → 주간1 → 주간2 → 비번...

※ 채용일(예정): 2027. 1. 1.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지원비 별도 지급 / 4대 보험 가입

3.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학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요건

- 공고일 기준 15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군·민간·정부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기상예보 지원업무 분야

다. 우대요건

○ 기상예보 실무경력자(4년 이상)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명시된 자격증에 한해 인정함)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라. 가점요건

○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6급 이상인 자

- <서식1> 응시원서 기타사항에서 해당 항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마. 응시요건 세부사항

【 경력의 범위 】

-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 경력”이란 공고일 기준 15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 업무*(군·민간·정부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의미하며, 우대요건의 근무 경력은 근무 기간별로 차등 배점을 적용함

* 관련업무: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경력관련 증명서에 근무기관(업체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 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필수 및 우대요건 상의 경력요건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력 관련 사항이 모호하여 채용 요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기 타】

- 공통요건에 대한 판단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필수·우대·가점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26.10.20.)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응시요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통요건 및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 및 가점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경력 등)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단,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3배수 초과 시 서류전형 기준

평정요소		배점	채점기준					
일반 분야 전형 요소	자기소개서	40점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40~31	30~21	20~11	10~6	5~0
	직무수행계획서	40점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40~31	30~21	20~11	10~6	5~0
우대 요건	기상예보 실무경력	15점	12년 이상	8년 이상 ~ 12년 미만	4년 이상 ~8년 미만	4년 미만		
			15	10	5	0		
	관련분야 자격증	5점	1개 이상			0개		
			5			0		
합계		100점						
가점		3점	- 장애인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내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①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예의·품행 및 성실성, ③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업무수행 적합성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회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채용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제출한 요건 증빙 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완료 후 채용일을 결정하며,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10.20.(화)~10.30.(금)	10.28.(수)~10.30.(금)	11.12.(목)	11.17.(화)	11.26.(목)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번호 E-mail 통보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장소: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변경 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6. 10. 28.(수) 09:00 ~ 10. 30.(금) 18:00

○ 접수방법: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 전자우편 접수처: ymchoi302@korea.kr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응시원서로 인정

- e-mail 제출 시 서식을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pdf)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전문상담_홍길동.pdf)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에 날짜, 서명 필히 기재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제출서류(붙임 참고)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응시원서	필수제출 <서식 1>
2	자기소개서	필수제출 <서식 2>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제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제출 <서식 4>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5>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6>
7	병역 사항 증빙 서류 (예: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증빙서류 등)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8	공고일 기준 15년 이내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증빙서류 (예: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등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확인 가능 자료)	필수제출
9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 (기상예보 실무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해당자 제출
10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증빙서류	해당자 제출

※ 위 서류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 동의서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반드시 서명인 작성

※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통·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가점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7.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 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 알림·자료 - 채용 - 채용정보>>를 통해 공고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채용담당자(042-481-7448)로 문의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은 요청 시 제공)를 작성하여 전자우편(ymchoi302@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단, 예비합격자는 **6개월 경과 후 파기**)

9.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예정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기간제 근로자 (기상상담원)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콜센터)	3명

주요업무	○ 기상문의에 대한 전문상담 처리 - 동네·중기·계절·장기 기상예보, 특보 및 기상정보 전문상담 - 황사, 장마, 폭염, 태풍, 대설 등 위험기상 전문상담 - 지진통보 및 지진정보 전문상담 - 상담내역, 민원의 처리 및 종결 등 ○ 자료 수집 및 일반상담사 교육 - 각 근무조에 기상예보 브리핑 - 최근 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기상예보 교육 등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 및 수행태도 ○ (직무분야 역량) 기상예보에 대한 해설 및 브리핑, 강의 역량, 이해 전달력, 간결 및 명확한 표현 구사
------	---

필요지식	○ 기상 및 대기 상식, 기상 용어 등 지식 ○ 온라인 영상회의 활용 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관련분야 : 기상상담직	
	공통요건	○ 최종시험일(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학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주간 교대근무 가능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필수조건	○ 공고일 기준 15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 업무*(군·민간·정부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기상예보 지원업무 분야
우대요건	○ 기상예보 실무 경력자(4년 이상) ○ 관련분야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소지자	
가점요건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6급 이상인 자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 제출서류 작성시 파란색 글씨는 반드시 삭제하고, PDF로 변환하여 제출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말 것(채용 담당자 기재)
 - ② 공통사항
 - 연락처: 본인 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재
 - * 원서접수 확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일시·장소 등 공지 시 필수
 - 주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해당되는 곳에 “√”하고, 여자의 경우 해당없음에 “√” 기재
 -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에 대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 필수
 - ③ 기타사항(해당자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 기재
 - ④ 필수사항: 공고일 기준 15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군·민간·정부기관) 근무경력 기재
 -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기상예보 지원업무 분야
 - ⑤ 우대사항(해당자 기재): 기상예보 실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기재
-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할 것(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
-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함

<서식 1> ※ 응시원서 등 아래 제출서류 작성 시 파란색 글씨는 삭제 후 제출

응시원서

응시분야	기상상담(전문상담)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가. 인적사항			
성명	(한글) 홍길동	생년월일	예) 1900. 0. 00.
연락처	(휴대폰) 010-0000-0000	병역사항	☐ 필, ☐ 면제, ☐ 미필, ☐ 해당없음 ※ 해당하는 곳에 √
	(e--mail)		
주소 (현거주지)	(우:)		
기타	☐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해당자만 √)		

나. 필수요건(공고일 기준 15년 이내 기상예보 및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				
경력 사항	근무기관(업체)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기상청(예보과)	2000. 3. 1. ~ 2001. 4. 1.	기상주사	기상예보
				최근 경력부터 작성

다. 우대요건(기상예보 실무경력 및 자격증)				
예보 실무 경력	근무기관(업체)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자격 사항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비고
	기상기사	2020. 3. 17.	한국산업인력공단	-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귀하	

<서식 2>

자기소개서 (2매 이내)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채용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2매 이내)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지원분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등 간략히 아는 대로 쓰시오

☐ 업무수행 계획

입사 이후 수행할 업무계획 등 향후 업무수행 계획을 쓰시오

2026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다. 최종 불합격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상콜센터 전문상담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지 원 자 (서명)

[참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